

목차	기존	개정사항	페이지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다. 법적 근거	6)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 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 제출 요구 기관·단체),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자),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운영 규정,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6)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 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 제출 요구 기관·단체),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자),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할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5호)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운영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94호)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5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라. 예방접종 실시기준	-	5) 예방접종 주의사항 ⇒ 계란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사람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8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관리 체계 나. 기관별 역할	백신관리 • 백신 관리 철저 (백신별 분리 보관) 예방접종 안전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 • 시·군·구 기초조사 실시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	백신관리 • 백신 관리 철저 (백신별 분리 및 적정온도 보관) 예방접종 안전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 • 시·군·구 기초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	11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관리 체계 나. 기관별 역할	2) 시·도 - 3) 보건소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기초피해조사	2) 시·도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소액 심의 3) 보건소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기초피해조사	12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1) 1일 접종 인원수 제한 ○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	1) 1일 접종 인원수 제한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어르신, 임신부, 어	15

<p>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p>	<p>상자의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1일 예진 의사 1인당 최대 접종 가능 인원수 100명 제한 * 단, 예외 인정 접종의 경우 최대 접종 가능 인원예 포함되지 않음</p>	<p>린이)는 100명에 포함단, 예외인정기준 해당(지역특성, 촉탁의, 당일진료, 장애인), 코로나19 유료 인플루엔자, 그리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접종 건 수는 제외</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p>	<p>3)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설명</p>	<p>3)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설명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 관찰</p>	<p>15</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p>	<p>4) 오접종 예방 ○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접수단계, 예진 단계, 접종단계)로 접종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 확인(예: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구분) 하도록 홍보 및 교육 실시 - 인플루엔자 대신 다른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호명하여 어르신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름, 생년월일 등 2가지 이상의 정보로 철저히 확인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접종자와는 다른 고유색(녹색)의 스티커, 목걸이 등으로 접종대상자를 구분 - 인플루엔자 고유색(녹색) 지정 → 코로나19 백신과 구분되도록 접종대상자·보관·부대 물품(냉장고 등) 구분하여 표시(스티커·목걸이 등, 의료기관별 자체 조치) ○ 오접종 발생 시 보고체계 - 오접종 발생 시 접종의료기관은 오접종 발생 즉시 오접종 사실에 대하여 보건소로 우선 보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오류발생 보고서[별첨 14]를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시·도는 질병관리청에 공문발송 * 보고체계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 (접종 기관)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우선 보고 *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 알게 된 경우 위탁해지 가능 - (보건소) 오류발생 보고서 작성 후 시·도에 보고 * 접종 당일에 보고해야 하며, 접종 7일 후 후속 조치·이상 반응 결과 보고 - (시·도) 보건소에서 작성한 오류 발생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에 공문발송 ○ 오접종 이상 반응 관리 및 후속 조치 - 보건소는 접종 7일 후 대상자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후 신고 * 단, 이상 반응 발생 시 이상 반응 신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 보건소는 오접종 발생 기관 대상 후속·보완 조치(현장 점검, 재교육, 주의 등) 실시</p>	<p>4) 오접종 예방 ○ 오접종 발생 시 보고체계 ※ 오접종 등록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접종부터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오접종 보고 가능함 ※ 오접종 발생 시 오접종의 접종력도 반드시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해야 함 - 오접종 발생 시 접종의료기관은 오접종 발생 즉시 오접종 사실에 대하여 보건소로 우선 보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오접종 발생 보고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조회 > 오접종 등 관리 * 세부 사항은 [부록 10] 인플루엔자 오접종 발생 보고서 작성 매뉴얼 참고 - (접종 기관)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우선 보고 *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 알게 된 경우 위탁해지 가능 - (보건소) 오접종 접종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도에 보고 * 접종 당일에 오접종 등록을 해야하며, 접종 7일 후 후속 조치·이상 반응 결과 보고(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 - (시·도) 보건소에서 등록한 인플루엔자 오접종 등 발생 보고서 조회 및 관리 ○ 오접종 이상 반응 관리 및 후속 조치 - 보건소는 접종 7일 후 대상자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후 신고 * 단, 이상 반응 발생 시 이상 반응 신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 보건소는 오접종 발생 기관 대상 후속·보완 조치(현장 점검, 재교육, 주의 등) 실시</p>	<p>16</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마.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p>	<p>2) 이상 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 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 관리 * [부록 10] 이상반응 전산 관리 참고</p>	<p>2) 이상 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안전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 관리 * [부록 10] 이상반응 전산 관리 참고</p>	<p>19</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마.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p>	<p>3)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내에 신청 가능</p>	<p>3)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보상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가 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내에 신청 가능</p>	<p>19</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마.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p>	<p>-</p>	<p>3)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3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p>	<p>19</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p>	<p>1) 역학조사 및 중증 이상 반응 신속 대응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 보건소 이상 반응 담당자는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인터넷(웹)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 반응 → 중증 이상 반응 신고 관리</p>	<p>1) 역학조사 및 중증 이상 반응 신속 대응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 보건소 이상 반응 담당자는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인터넷(웹)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중증 이상 반응 신고 관리</p>	<p>20</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3. 예방접종 안전관리 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p>	<p>1) 역학조사 및 중증 이상 반응 신속 대응 ※ 사인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간과 관계없이 접종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전화 연락 및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4, 8377)에 보고</p>	<p>1) 역학조사 및 중증 이상 반응 신속 대응 ※ 사인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간과 관계없이 접종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전화 연락 및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2, 8354, 8364, 8366, 8355)에 보고</p>	<p>21</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5. 2023-2024절기 사업 개요 나. 사업내용</p>	<p>○ 어린이: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2009.1.1. ~ 2022.8.31. 출생자) *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자(주한 외국공관과 국제 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 *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접종 가능 * 임신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산모 수첩, 임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지 않으나, 접종 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인플루엔자 접종 등록 시</p>	<p>1) 사업 대상 ○ 어린이: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2010.1.1. ~ 2023.8.31. 출생자) ※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 ※ 어린이 지원사업 대상은 2023년 8월 31일 출생자(2024년 2월 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까지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p>	<p>24</p>

	<p>입력</p> <p>* 어린이 지원사업 대상은 2023년 2월 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로 2022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p>	<p><사업대상별 공통사항></p> <p>*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자(주한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p> <p>*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p> <p>*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 지원 접종 가능</p>	
<p>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p> <p>5. 2023-2024절기 사업 개요</p> <p>바. 사업내용</p>	<p>5) 사업 지원 백신 [Egg-based]</p> <p>-A/Victoria/2570/2019 (H1N1)pdm09-like virus -A/Darwin/9/2021 (H3N2)-like virus -B/Austria/1359417/2021-like virus (B/Victoria lineage)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 lineage)</p> <p>[Cell- or recombinant-based]</p> <p>-A/Wisconsin/588/2019 (H1N1)pdm09-like virus -A/Darwin/6/2021 (H3N2)-like virus -B/Austria/1359417/2021-like virus (B/Victoria lineage)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 lineage)</p>	<p>5) 사업 지원 백신 [Egg-based]</p> <p>-A/Victoria/2570/2019 (H1N1)pdm09-like virus -A/Darwin/9/2021 (H3N2)-like virus -B/Austria/1359417/2021 (B/Victoria lineage)-like virus -B/Phuket/3073/2013 (B/Yamagata lineage)-like virus</p> <p>[Cell- or recombinant-based]</p> <p>-A/Wisconsin/588/2019 (H1N1)pdm09-like virus -A/Darwin/6/2021 (H3N2)-like virus -B/Austria/1359417/2021 (B/Victoria lineage)-like virus -B/Phuket/3073/2013 (B/Yamagata lineage)-like virus</p>	<p>26</p>
<p>II.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1. 사업 개요</p> <p>나. 사업 대상</p>	<p>사업 대상</p> <p>*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접종 가능</p>	<p>사업 대상</p> <p>*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접종 가능</p>	<p>29,46,59</p>
<p>II.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p> <p>1-2. 위탁의료기관 관리</p> <p>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관리</p> <p>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p>	<p>○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교육 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의 승인(043-719-8362)'을 받아야 함</p> <p>* 권한 신청 시, 기관인증서가 아닌 개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함</p> <p>○ 교육 신청은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신청</p>	<p>○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교육 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승인'</p> <p>* 권한 신청 시, 기관인증서가 아닌 개인인증서 & 간편인증서로 신청해야 함</p> <p>* 문의: 043-719-8398, 8399, 8386</p> <p>○ 교육 신청은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신청</p>	<p>32,48,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신규 및 기존 참여 중인 경우 필수 이수 - (기본교육)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 및 기존 참여 중인 위탁의료기관에서 공통필수 교육 수료 2년이 도래하는 경우 필수 이수 - (기본교육)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II.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2. 위탁의료기관 관리 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관리 1) 위탁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지원 사업 - (추가계약) 기간 제한은 없으나, 사업 시작 이전까지 계약 완료, 사업 시작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지원 사업 - (추가계약) 기간 제한은 없으나 신규 및 재계약 체결 기간까지 계약 완료, 신규 및 재계약 체결 기간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추가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34
II.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2. 위탁의료기관 관리 나. 위탁의료기관 관리 1)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	-	<p>⑫ 관할보건소에서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한 백신의 재분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40,55,69
II.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2. 위탁의료기관 관리 다.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1) 예방접종 비용상환 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	<p>※ 단, 75세 이상 어르신은 예외인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p>	40
II. 사업 대상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1. 사업 개요 라. 기관별 역할	<p>2) 위탁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등)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임신부 지원 사업용 백신 개별 구매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백신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등 적극 협조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임신부 지원 사업용 백신 개별(자체) 구매 ※ 지난 절기 구매량·사용량·잔여량 등 고려 적절한 수량 구매 (과다 구매 지양)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사업용 백 	<p>2) 위탁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등)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백신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등 적극 협조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임신부 지원 사업용 백신 개별(자체) 구매 ※ 지난 절기 구매량·사용량·잔여량 등 고려 적절한 수량 구매 (과다 구매 지양) ○ 백신 관리 철저(부록 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예방접종 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47,61

	신의 적절한 수량 구매(과거 사업 대상 접종 현황을 참고하여 과다한 구매를 지양) ○ 백신 관리 철저(부록 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예방접종 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관할 시·도, 보건소와 지역사회 예방 접종률 향상 등 업무협조체계 유지	○ 관할 시·도, 보건소와 지역사회 예방 접종률 향상 등 업무협조체계 유지	
별첨서식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양식 현행화	85-86
별첨서식3.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참여 확인증	-	양식 현행화	88
별첨서식4.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 백신 시행 확인증	-	양식 현행화	89
별첨서식5.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교육수료증	-	양식 현행화	90
별첨서식7.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	양식 현행화	92-97
	백신관련 점검사항 9) 온도기록지 보관 : 2년	백신관련 점검사항 9) 온도기록지 보관 : 5년	94
별첨서식8.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표	-	양식 현행화	98-102
	백신관련 점검사항 9) 온도기록지 보관 : 2년	백신관련 점검사항 9) 온도기록지 보관 : 5년	100
부록1.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	현행화	109-119
부록2. 2023-2024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 종류	-	현행화	120

부록3. (총량구매-현물공급) 백신 재분배 매뉴얼	-	현행화	121-122
부록4.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온도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	온도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관	123-139
	<p>2. 백신 관리담당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관리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관리(연 2회, [참고1]) <p>4. 백신 보관 및 관리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 관리담당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백신 보관 및 관리 요령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준업무절차 지침을 작성하여 백신 보관 장비 근처에 항상 비치한다. 표준업무절차 지침에 담겨야 할 내용은 ([참고 3])을 예시로 참고하여 작성한다. ○ 비상 상황 시 백신 보관 및 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백신 보관 장비 근처에 항상 비치한다. 비상 상황 시 지침에 담겨야 할 내용은 ([참고 4])를 예시로 참고하여 작성한다. 	<p>2. 백신 관리담당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관리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관리(연 2회) <p>4. 백신 보관 및 관리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 관리담당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백신 보관 및 관리 요령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준업무절차 지침을 작성하여 백신 보관 장비 근처에 항상 비치한다. ○ 비상 상황 시 백신 보관 및 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백신 보관 장비 근처에 항상 비치한다. 	
부록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예방접종 권한 신청 매뉴얼 (의료기관)	-	현행화	140-143
부록 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	현행화	144-160
부록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방법	-	현행화	161-162
부록 8. 이상반응 전산 관리	-	현행화	163-167
부록 10. 예방접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	현행화	178-183

<p>부록 1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FAQ</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플루엔자 질병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나요? 3. 사업 총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6. 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 100명 제한에 인원수에 포함되는 접종은? 4. 기관인증서 등록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4-4. 기관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5. 교육수료정보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계약신청 메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교육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할 의사가 다수인 경우, 모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9. 백신 수급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9-3. 위탁의료기관에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의 예상 소요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4. 위탁의료기관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9-6.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10. 이상반응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1.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p>184-199</p>
-------------------------------------	----------	--	----------------